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665

발의연월일: 2025. 3. 5.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헌승

이인선 • 고동진 • 최은석

조배숙 • 한지아 • 박충권

김기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금 생산·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등으로 하여금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요건·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받았음에도 영업을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허가취소 처분은 영업정지 명령보다 중한 제재이므로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를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영업한 자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례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허

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한 자와 동일하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무허가 영업이라 는 동일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중복하여 명시한 것 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완화하고, 허가취소 처분을 받고 영업을 계속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규제 완화 및 제도 정비를 통하여 소금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3조제2호 삭제 및 제6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6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제63조(벌칙) | | |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 | | |
|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 | |
| 의 벌금에 처한다.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2. 제26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 | <u><삭 제></u> | | |
| 되었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받 | | | |
| 았음에도 염전을 개발하거나 | | | |
| <u>소금을 생산한 자</u> | | | |
| 3. ~ 13. (생 략) | 3. ~ 13. (현행과 같음) | | |
| 제6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 제66조(과태료) ①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 | |
|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
| 부과한다.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u><신 설></u> | 1의2. 제26조에 따라 영업정지 | | |
| | 명령을 받았음에도 염전을 개 | | |
| | 발하거나 소금을 생산한 자 | | |
| 2.・3. (생략) | 2.・3. (현행과 같음) | |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